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7321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473,610원 및 그 중 30,806,729원에 대하여 2024. 6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